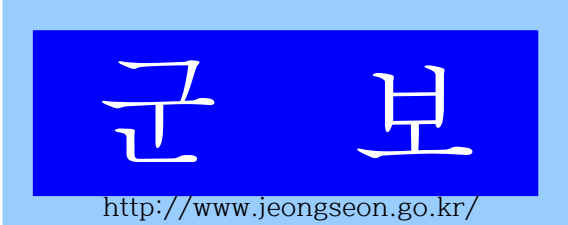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78호 2021. 10. 06.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1-1162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7호) 공사 완료 공고.....1
- 정선군 공고 제2021-1174호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2
- 정선군 공고 제2021-1185호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5
- 정선군 공고 제2021-1191호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15
- 정선군 공고 제2021-1207호 정선군 버스공영차고지 CCTV감시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16
-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1-24호 정선군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1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1-1162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7호) 공사 완료 공고

정선(신동)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7) 개설사업(소교량)이 아래와 같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6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소로3-17호) 사업
 - 나. 명 칭 :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소로3-17호) 개설사업(소교량)
3. 사업의 면적 (금회시행)
 - 가. 면 적 : $A=690m^2(L=105m, B=6.0m)$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공일 : 2021. 6. 18

정선군 공고 제2021-1174호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명승)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정 선 군 수

1. 공 고 명 : 「백운산 칠족령」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내용

-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 지정명칭 : 백운산 칠족령(白雲山 漆足嶺, Chiljoknyeong Pass in Baegunsan Mountain)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20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산138
- 지정사유
 - 백운산 칠족령은 순조 대에 편찬된 『만기요람』에 동남쪽 통로로 기록된 대표적 고갯길로 문희리(文希里)를 거쳐 동면내창(東面內倉)으로 가는 경로가 「평창군 오면 지도」에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동강(남한강 상류)에 이르는 최단 경로로 알려져 있음.
 - 길에서는 감입곡류를 이루는 동강의 빼어난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승지임
- 문화재지정구역 : 9필지, 106,721㎡
- 문화재 관리단체 : 강원도 평창군·정선군
- 지정구역 지번 목록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지정구역	성명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산128	임	100,066	3,131	최*철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산129	임	15,868	10,172	국(환경부)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산133-2	임	992	472	업*주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산139	임	91,068	14,776	동래정씨 사암공파 영평정지구 종친회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산146	임	1,016,430	22,367	국(산림청)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20	전	3,369	659	국(환경부)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	임	5,883,987	41,303	국(산림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지적	지정구역	성명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6	임	26,479	3,209	평창군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8	임	46,17	10,632	국(환경부)	
계			9필지	106,721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2021. 09 16. 예정)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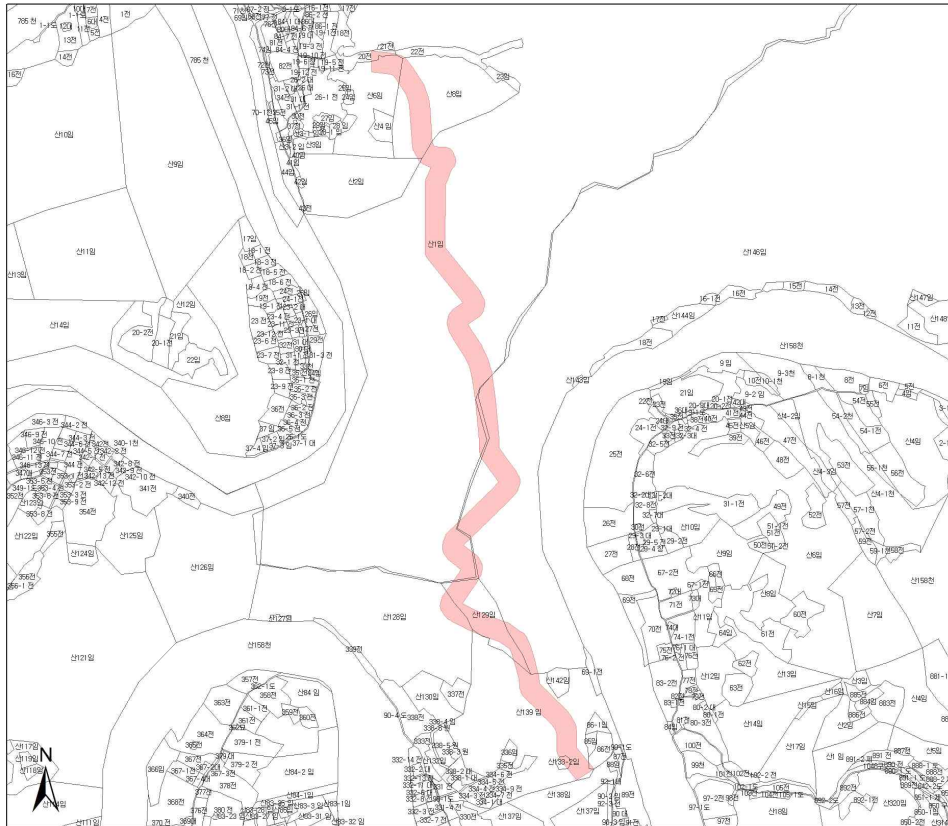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강원도 문화유산과, 정선군 문화관광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66 / 팩스 (042)481-499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
 - 주소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 주소 (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도면.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도면



명승 제000호
백운산 칠족령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20 외

범례
 문화재
 연속지적

축척	1:7,500
----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의 사용을 금합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1-1185호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2020.6.16.)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라 방재단 소집 시 수당 지급 근거 규정 신설에 따른 소집수당 지급 기준 반영
 - 일반직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수당 단가로 지급

3. 입법예고기간 : 2021. 09. 23. ~ 2021. 10. 13.(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정선군수 (시설국 건설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수(시설국 건설과)

○ 연락처 : 전화(033-560-2498), 팩스(033-560-2591)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건설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 현장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제3호, 제2-1호,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성 명	(인)	등록번호	※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_____ :

성 명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_____ :

단 체 명			대 표 자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 **재해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a/㎡(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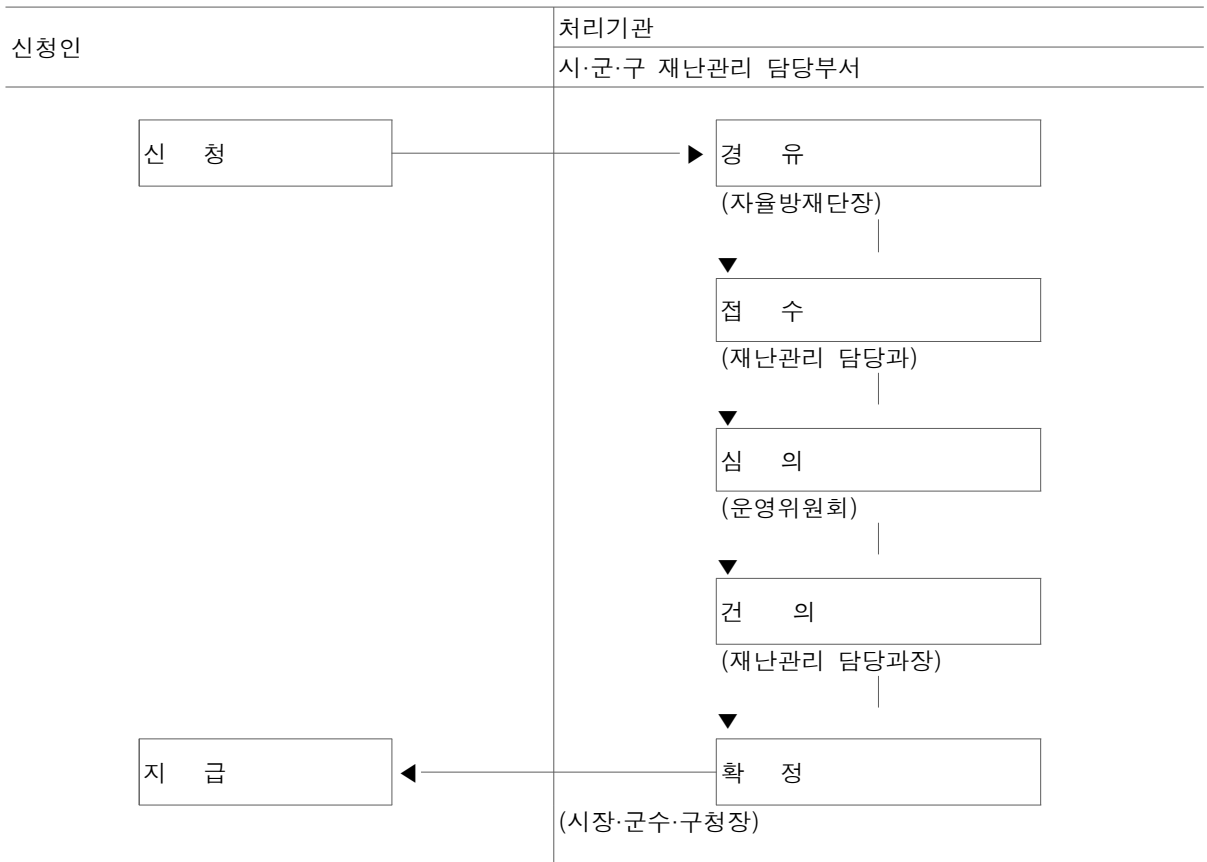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붙임] 관계법령 발취

관계법령 발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6.>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6. 16.>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20. 6. 16.]

정선군 공고 제2021-1191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정 선 군 수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2021.6.1. 기준 개별주택가격

- 공시대상 : 218호

나. 공시내용 : 개별주택의 지번 및 가격 등

다. 열람방법 : 군청 세무과(☎033-560-2149)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개발/공시지가열람) 열람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21년 9월 30일 ~ 10월 29일

나. 신청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라. 제출장소 : 정선군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마. 처 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

3. 기타사항

- 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정선군청 세무과(☎033-560-2149)로 연락

정선군 공고 제2021-1207호

정선군 버스공영 차고지 CCTV 감시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정선·신동·여량 버스공영 차고지 CCTV 감시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30일

정 선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 정선·신동·여량 버스공영차고지 CCTV 감시시스템 설치
2. 설치목적
공영버스 이용자의 안전과 공영버스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선·신동·여량 버스공영 차고지 CCTV 감시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3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 기간 : 2021. 09. 30. ~ 2021. 10. 19. (20일간)
5. 공고 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jeongseon.go.kr>)

6. 설치 장소

연번	설치·운영 장소	기능
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26 일원	
2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712번지 일원	
3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272-4번지 일원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안전과(교통지도팀)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처 : 정선군청 시설국 안전과(☎033-560-2517)

라. 제출기간 : 2021. 09. 30. ~ 2021. 10. 19. (20일간)

마. 제출방법

○ 우편 : (우) 26132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26(정선버스터미널)
정선군청 안전과 공영버스정책팀

○ 팩스 : 033-562-6400

바. 제출서식 : 붙임 의견제출서

8.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서 1부. 끝.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1-24호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수도법」개정 및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여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에 반영(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비(안 제2조~ 제21조)
 - 사용하고 있지 않은 용어 정비.
- 간이급수시설 급수공사 급수관 관리 강화(안 제4조 3항, 4항, 5항)
 - ③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신축건물에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1. 마을상수도 : 서식4의 급수공사 허가신청서 접수하고 관리자의 승인
 2. 소규모급수시설 : 서식5의 간이급수시설 공급 확인서(동의서)를 협의회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는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받은 업체에 한정하며, 급수공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원이 부족할 경우 관리자는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않는다.
- 수도법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명문화(안 12)
 - 현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건강검진을 수도법에 정한 마을상수도 관리업무 종사자로 명확화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1. 10. 6. ~ 2021. 10. 26.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 연 락 처 : 전화(033-560-2522), 팩스(033-560-2940)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상하수도사업소
- 홈페이지 : <https://www.jeongseon.go.kr>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21조까지 중 “소규모수도시설”을 “간이급수시설”로 한다.

제4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신축건물의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 1. 마을상수도 : 서식4의 급수공사 허가신청서 접수하고 관리자의 승인
 - 2. 소규모급수시설 : 서식5의 간이급수시설 공급 확인서(동의서)를 협의회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는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받은 업체에 한정하며, 급수공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원이 부족할 경우 관리자는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않는다.

제12조(건강검진) 중 “소규모수도시설”을 “마을상수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비계획수립) ①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u>소규모수도시설</u>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정비계획수립) ①----- -----<u>간이급수시설</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수·보수, 소독 등 <u>소규모수도시설</u>의 운영·관리일체를 관장한다.</p> <p>②관리자는 <u>소규모수도시설</u>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소규모급수시설</u>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4조(시설의 관리) ①----- ----- ----- -----<u>간이급수시설</u>의----- ----- -----</p> <p>②----- <u>간이급수시설</u>의 ----- ----- ----- ----- ----- -----</p> <p>③간이급수시설의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p> <p>1. 마을상수도 : 서식4의 급수공사 허가신청서 접수하고 관리자의 승인</p> <p>2. 소규모급수시설 : 서식5의 간이급수시설 공급 확인서(동의서)를 협</p>

<p><신 설></p> <p><신 설></p>	<p>의회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는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받은 업체에 한정하며, 급수공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p> <p>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원이 부족할 경우 관리자는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않는다.</p>
<p>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u>소규모수도시설의</u>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②관리자는 <u>소규모수도시설</u>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u>간이급수시설의</u> ----- ----- ----- ②----- <u>간이급수시설</u> ----- ----- ----- -----.</p>
<p>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u>소규모수도시설의</u>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②<u>소규모 급수시설의</u>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점검) ①----- <u>간이급수시설의</u> ----- ----- ----- ----- ----- ----- ----- ----- ----- ----- ②<u>간이급수시설의</u> ----- ----- ----- -----.</p>

<p>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소규모급수시설의</u>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조(개선조치) ----- ----- ----- ----- ----- <u>간이급수시설의</u> ----- ----- -----.</p>
<p>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u>소규모수도시설을</u> 우선적으로 개수·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수·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관리자가 개수·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9조(유지보수) ①----- ----- ----- ----- ----- <u>간이급수시설을</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u>소규모수도시설에</u>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u>간이급수시설의</u>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p>	<p>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 ----- ----- <u>간이급수시설에</u> ----- ----- -----</p>

<p>을 세워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p>	<p>----- -----.</p>
<p>①소규모수도시설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대장 2. 시설물 준공도면(설비 및 관망도) 3. 수질검사성적서 	<p>①간이급수시설의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p>②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 등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시설개량 등으로 통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간이급수시설을 ----- ----- ----- ----- -----.</p> <p>----- 간이급수 시설 ----- ----- -----.</p>
<p>③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p>③----- 간이급수시설을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p>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p>	<p>제12조(건강진단) ----- -----</p>

<p>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u>소규모수도시설의</u>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 - <u>마을상수도의</u> ----- ----- -----.</p>
<p>제14조(관리비용) ①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u>소규모수도시설의</u>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u>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u>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u>소규모수도시설의</u>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관리비용) ①----- ----- ----- <u>간이급수시설의</u> ----- <u>간이급수시설</u> ----- -----. ----- -----. ②<u>간이급수시설의</u> ----- ----- ----- -----.</p>
<p>제16조(설치) <u>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u>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부담 등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제16조(설치) <u>간이급수시설</u> ----- ----- ----- ----- -----.</p>
<p>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u>소규모수도시설의</u>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2. <u>소규모수도시설의</u> 관리비용 산정 및 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생략) 4. (생략)</p>	<p>제18조(기능) ----- -----. 1. <u>간이급수시설의</u> ----- ----- 2. <u>간이급수시설의</u> -----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p>

<p>5. (생 략) 6. (생 략) 7. (생 략) 8. (생 략) 9. (생 략)</p>	<p>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p>
<p>제21조(관리의 위탁) ①군수는 <u>소규모수도시설</u>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p>	<p>제21조(관리의 위탁) ①군수는 <u>간이 급수시설</u> ----- ----- ----- -----. (현행과 같음)</p>

[서식4]

급수공사허가신청서

설 치 장 소		생년월일	
신청자 성명		건 평	
용 도	가정용 . 일반용 (구경) Ø mm × ea		
특기사항란	☎	HP :	

1.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 제4조3항 의거 위와 같이 급수공사 허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준공과 동시 급수설비장치 및 옥외시설 일체를 귀군에 기부 체납하시고 이를 조례에 의거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신청자 성명 : (인)

결	담당자	담 당	소 장
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정선군상하수도소장 귀하

[서식5]

간이급수시설 공급 협약서(동의서)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지조건	위치(지번)	지적	
	용도지역·지구	지목	
신축개요	건물유형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기타	
	용도	<input type="checkbox"/> 가정용 <input type="checkbox"/> 가정용(공용수도) <input type="checkbox"/> 업무용(사설소화용 급수) <input type="checkbox"/> 임시급수	
	건물연면적(㎡)	일사용량(㎡/일)	
시설개요	시설번호	시설명	
	설치년도	시설용량(㎡/일)	
	소재지	시설구분 <input type="checkbox"/> 마을상수도 <input type="checkbox"/> 소규모급수시설	

위와 같이 간이급수시설에서 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 충분하므로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로서 물 공급이 가능함을 확인하여 보고·제출합니다.

년 월 일

마을이장 : (서명 또는 인)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법령 발췌

□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 2020. 5. 26.>

1. “원수(原水)”란 음용(飲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2.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 삭제 <2010. 5. 25.>

16. 삭제 <2010. 6. 8.>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6.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7.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0.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33.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하는

제32조(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 먹는물 수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제5조(건강진단) ①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수도법」 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화기계통 전염병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공장 또는 수도의 취수장·배수지 부근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2. 1.>

1.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취수·제조·가공·저장·이송 시설에서 종사하는 자와 「수도법」 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 : 6개월마다 1회

2.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호 외의 자 : 환경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관할 보건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및 소화기계통 전염병으로 한다.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 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1.04.20>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개정 2018.11.12.>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